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0. . .	
연 월 일	(제 회)	

양 식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기준 마련(안 제20조)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

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는 심사·평가 기준에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의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안 제29조)

무분별한 내수면 양식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육상내수양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종류에 기존 육상해수양식업 이외에도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추가하여 규정

라.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3조·제7조·제8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생산·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다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 입식량, 생산량 및 생산금액,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4. 양식인력 육성 현황 및 해외진출 현황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 현황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현황 및 수출 활성화 현황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현황 및 지원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양식장 이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시설면적, 입식량, 생산

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단,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양식업에 대하여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⑥ 시·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매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과 양식업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양식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

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수면의 개발에 대한 그 승인여부 또는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어장 내 양식 적합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⑧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의 승인여부 등 제출 의무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제3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한다)

나. 내만(외해양식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

역을 말한다)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일 경우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신청인이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양식장구역마다 양식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마을어업의 양식장·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양식장·어장에서 같은 종류

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9조(면허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룽(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뜬·밧줄·채룽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뜬·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업(수중 또는 표층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

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 양식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이다.

⑦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호수·늪·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뜬·밭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사업

⑧ 면허권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양식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제10조(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면허하는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어촌계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단 내수면양식업면허의 경우에 한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 내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식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13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양식업권이 취소되어
양식업면허 금지기간 중에 그 취소된 양식업권 외의 다른 양식업권
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그 다른 양식업권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양식업면허를 금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법 제1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면허의 금지기간
3. 양식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양식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면허권자는 그 요
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면
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법 제43조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15조(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에 적힌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대표자 선정신고서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면허나 양식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양식업면허 또는 양식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양식업을 제외한 같은 항 각 호의 양식업면허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양식업허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양식업허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양식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7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면허의 심사·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 기간 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장휴식 이행 여부
2. 면허 기간 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 이행 여부

제20조(면허의 심사·평가 기준 등)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양식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27조제1항제6호(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정지, 양식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야 하며, 결정된 조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면허의 제한 등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3조(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처분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행정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미한다.

1.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해당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총회 등을 통해 인정된 사람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허권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어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

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주된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양식시설의 명칭 및 양식시설 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26조(지구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양식장 출입의 자격, 양식업권 행사의 자격, 양식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양식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의 관리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승인하는 경우에는 바닥식 양식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협동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승인된 어선이나 이를 대체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승인하여야 한다.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양식업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기타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제30조(수면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

할 수 있다.

②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단축 사유 및 단축기간을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이 영 제13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제한·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종류에 따른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 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양식 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이나 금지
5. 민간 차원의 양식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 및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다.

1.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종

2.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 또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사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제43조(불법 양식시설물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해양식업은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 양식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 양식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양식시설물 및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자연·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
4. 양식장 및 양식장관리선의 작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시책 등) 법 제62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 중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식창업에 관한 사항

제47조(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지원
2.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양식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 보조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과학기술의 진흥
2. 양식경영 지원사업
3. 양식단체의 육성
4. 양식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사료제조기·그물
· 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관리사업
8.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양식업협력사업
9.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0. 양식생산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의 육성·관리사업
12. 양식업 정보화사업

제7장 보칙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요구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출할 자료의 내용
3. 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4. 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 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제53조(권한 등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 면허의 심사·평가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의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 실태조사 업무를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54조(과태료)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업용”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9호, 제11호, 중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업용”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업용”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2조제1항제5의2호를 제5의3호로 하고,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
가를 받은 자
제33조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
서 신규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3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허가를 하는 경우
제33조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
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허가를 하는 경우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7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⑨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입어 및 유어(遊漁)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제5조의3제3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를 “어업·양식업과 이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5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라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⑫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나목 중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업용”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을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으로 한다.

⑮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⑯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조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⑲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육상등 내수양식업용”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을 “육상등 내수양식업용 시설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의 내수면에서 양식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나목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육상등 내수양식업용”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육상등 내수양식업용”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22조 중 “내수면육상어업용”을 “육상등 내수양식업용”로 한다.

②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

(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㉓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다목 중 “어업용”을 “어업·양식업용”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㉖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제1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다.

㉗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단서 중 “어업”은 “어업·양식업”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권”은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수산업법」”은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은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업용”으로 한다.

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마목에 따른 어업·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양식수산물

㉚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조제목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업별·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을 “어업별·품종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

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으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중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포획·채취 및 양식을”을 “포획·채취를”로 한다.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채취”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6호 중 “수산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
을 “수산종자”로 한다.

제72조제12호 중 “조성사업, 양식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을 “조정·
보상·재결”로 한다.

별표 1의 어업별란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시설물”
로 한다.

㉓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2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 “어업 외 소득”을 “어업·양식업 소득”, “어업·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제2호, 제7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한다.

제13조제7호 중 “어업자”를 “어업자·양식업자”로,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제9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을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다.

㉕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㉖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제3조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㉗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제53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을 “어업면허기간, 어업허가기간 또는 양식업면허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어업면허·어업허가”를 “어업면허·어업허가·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제4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

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및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은 제외한다)”로 하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어업면허·양식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양식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한다.

㉟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수산업법」 제2조”으로 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를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양식어업권 또는 허가어업·허가양식업·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④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다.

④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어업권”으로,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9호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별표 제60호부터 제62호까지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
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산업발전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
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또는 「양
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수수료

별표 제64호부터 제71호까지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

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69. 「수산업법」 제20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별표 제74호부터 제75호까지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또는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별표 제79호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9.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내수양식업 허가 수수료

별표 제84호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별표 제86호부터 제95호까지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또는 허가양식업 폐업 신고 수수료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

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휴업 신고 수수료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양식업 재개 신고 수수료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④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④⑧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임·어업”을 “임·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활동”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활동”으로 한다.

⑤⑩ 향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로 한다.

⑤⑪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 중 “나.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으로 하고,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전”으로 한다.

별표 7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 중 다목을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역에 지정되는 양식산업단지”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란에는 “「양식산업발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
으로 한다.

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을 위한 시설

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양식산업발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7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
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
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 법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
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제4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⑤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⑤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및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한다.

⑤6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을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과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로 하고,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2.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조건의 해제

2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의 해제

3.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6. 제3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양식업권의 취소

8. 어업권·양식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
10.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해제·취소
13.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시·군·동·읍·면·리·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의 어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제42조 제2항 중 “법 제12조”를 “「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제26조”로, “어업권등록부”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 (제20조 관련)

구 분	평 가 항 목
1. 일반 기준	○ 면허 기간 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장 휴식 실시 여부
	○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의 결과
	○ 면허 기간 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장 청소 실시 여부
	○ 면허 기간 내 수산 법령 위반 여부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 기간 내에 1년 이상 휴업(「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 했는지 여부 - 어촌계·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경우 법 및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2. 세부기준 : 각 항목별 점수배정 등 그 밖에 면허의 심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제28조제2항 관련)

어업별	지역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해조류양식업 외해양식업	전국	「어선법」 상 어선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

- 1) 양식장형망선 :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
- 2) 자원관리채취선 :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	법 제81조 제1항제1호	40	80	150

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2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5		
나)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		
다)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		
다.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3호	20	40	7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양식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25	50	100
마. 양식업권자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5호	15	30	50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6호	20	40	70
사. 양식업권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양식업권을 행사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7호	25	50	100
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	법 제81조	25	50	100

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8호			
자. 법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9호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40	70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0		
차.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10호	150	300	500
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11호	50	100	200
타.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12호	25	50	100
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12호	25	50	100
하.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13호	25	50	100